

2022년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모집 공고

소공인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2022년도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12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의 국내·외 판로개척 발굴·지원으로 신규 판로 확보와 매출향상 지원

나. 지원규모 : 220개사 내외(업체당 국비 최대 30백만원)

다.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라.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지원(국비 80% 이내, 자부담 20% 이상)

마. 지원내용

- 소공인이 국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판로지원 항목 중 필요한 항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활용하는 방식으로 지원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한도	
		국고보조금	자기부담금
전시회 참가	○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비(부스임차료, 부스장치비 등)	3,000만원 (80%)	750만원 이상 (20%이상)
온라인마케팅	○ 국내·외 온라인몰 입점 및 광고비 지원 ○ SNS, V-커머스,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 홍보비용 지원		
오프라인 매장입점	○ 국내·외 오프라인 매장(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등) 입점비(판매수수료, 집기임차비 등) 지원		
미디어콘텐츠 제작	○ 카탈로그(종이/전자), 포장, 제품, 상품페이지 디자인비용 ○ 기업·제품 홍보영상 제작 및 홈쇼핑·TV광고영상 제작·송출비 지원		

* 사업비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원하며, 환급가능한 부가가치세는 소공인 자부담 외 별도 부담(지원 불가)

2. 신청자격

가. 지원대상 : 소공인(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곳 (업종코드 : C10~C34) [붙임3], [붙임5] 참고

나. 자격요건

- 신청마감일(22.9.)기준 아래의 지원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구분	내용
휴폐업 및 부도	○ 공고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세금 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참여 제한	○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3.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2. 1. 17(월) ~ 2. 9(수) 18:00까지 (기한엄수)

나. 신청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접수

구분	신청방법
사업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사업신청 시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공모현황] 클릭 ▶ 공모기관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정 후 [검색]버튼을 눌러 공모확인 ▶ 공모목록에서 "2022년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선택
신청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사업찾기 → 공모명 "2022년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검색 ▶ "2022년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선택 후, 우측상단 [신청서작성]버튼 클릭 ▶ [사업기본정보], [수행기관정보], [세부추진계획], [자원조달계획], [예산집행계획], [자격요건확인], [첨부파일 제출] 등 각 탭 순서로 작성 ▶ 모든 탭의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저장 완료 후 [신청서제출] 탭의 [신청서제출] 버튼 클릭하여 접수완료 ▶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신청기간에만 가능 ※ 마감일에는 접속자 폭주로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유에 관계없이(시스템 오류 등) 마감 이후 추가접수는 절대 불가합니다.

- * e나라도움 신청대상은 회원가입(사업자 권한부여) 및 시스템 사용방법 사전숙지 필수
-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회원가입, 사업등록, 사업신청 등 문의사항은 e나라도움 사용자지원센터(1670-9595)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 신청서류 : 다음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구분	서류명	발급처
작성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식1>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서식2> 신청서 ▶ <서식3> 사업계획서 (5장 이내) ▶ <서식4> 제품설명서 ▶ <서식5> 개인(기업)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공고 내 서식1~5 확인
사업자 등록 확인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 단,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업태 : 제조업 必)	
소공인 확인 서류①	<input type="checkbox"/> 매출액·업종 확인서류(아래 4개 서류 중 택 1)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必)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최근 1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 ▶ 최근 창업하여 매출액·업종서류 제출이 불가할 경우, [붙임]주업종 영입 사실 확인서 작성하여 제출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국번없이 126) (www.hometax.go.kr)
소공인 확인 서류②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 소상공인 명시 必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을 경우,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제출필수		
소공인 확인 서류 ③	<input type="checkbox"/>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단,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ps.or.kr) (1577-1000)
	<input type="checkbox"/>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아래 4개 서류 중 택 1)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ps.or.kr) (1577-1000)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제출예시 * 업력이 12개월 이상이며, 직전 사업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료가 확인 가능한 경우 - 직전 사업연도의 12개월분의 자료만 제출 * 업력은 12개월 이상이지만 직전 사업연도의 기업운영 기간이 12개월을 넘지 못하는 경우 - 최근 12개월분의 자료 제출 * 업력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 사업개시일부터 사업신청일까지의 자료 제출 * 업력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신청일 현재의 인원을 확인할 자료 제출(상시근로자 존재시, '사업장 가입자명부', 상시근로자 미존재시,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가점서류	<input type="checkbox"/> 각 항목별 가점서류 ▶ 가점 항목별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공고문 내 가점항목 참고(5p)	

* 필수서류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4. 선정방법

가. 평가절차 : “①서류평가 → ②발표평가” 절차 진행

- (서류평가)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검토하여 추진계획, 제품역량 등 평가항목에 따라 외부평가위원의 심사 후 발표평가 대상선정
 * 신청자격 미충족, 필수서류 미제출 소공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발표평가) 과제책임자(대표자 또는 사업담당자)가 제출한 신청서류를 토대로 사업계획 발표 후 평가항목에 따라 질의응답 진행
 * 코로나19 확산 등 상황에 따라 발표평가 방식이 변경될 수 있음
- (최종선정) 평가를 통한 고득점 순위에 따라 최종 선정

나. 평가항목

○ (서류평가) 평가항목별 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구분	평가항목	배점
1	○ 사업추진기반 - 사업 이해도, 사업 수행 타당성 등	20
2	○ 사업추진계획 -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수행계획의 구체성, 사업실현 가능성 등	30
3	○ 제품역량 - 기술 및 품질경쟁력, 시장성 및 비교우위력, 가격경쟁력 등	35
4	○ 기대효과 - 성장가능성, 지속가능성 등	15
5	○ 가점 - 사회적경제기업, 백년소공인, 집적지구 소공인, 풍수해보험 가입자, 첫걸음 소공인	5
총 점		100(+5)

○ (발표평가) 평가항목별 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구분	평가항목	배점
1	○ 사업수행역량 - 사업 이해도, 수행의지, 역량 보유 등	25
2	○ 사업관리능력 - 수행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 - 예산편성 및 조달계획의 타당성 - 사업 목표 실현가능성 등	30
3	○ 제품경쟁력 - 제품의 시장성 - 보유제품의 차별성 - 가격경쟁력 등	35
4	○ 기대효과 - 성과창출 및 지속가능성, 파급효과 등	10
총 점		100

5. 가점

구분	가점항목(점수)	가점기준	제출서류
1	사회적경제기업 (3)	○ 사회적경제기업에 해당되는 소공인 - (유형) ①협동조합, ②(예비)사회적기업, ③자활기업, ④마을기업 중 1개	• 사회적경제기업 인증서 (또는 신고필증)
2	백년소공인 (3)	○ 중기부에서 선정한 백년소공인	• 소진공 확인 (제출서류 없음)
3	집적지구 소공인 (2)	○ 도시형집적지구 내에서 지정된 업종으로 사업장을 영위중인 소공인 - 세부 업종 및 지역은 <붙임2> 참고	• 소진공 확인 (제출서류 없음)
4	풍수해보험 가입자 (1)	○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 '풍수해보험' 가입 소공인 * 풍수해보험 보험기간이 신청마감일 기준 유효한 경우 인정	• 풍수해보험 보험증권 (소상공인 보험)
5	첫걸음 소공인 (3)	○ 본 사업의 수혜 경험이 없는 기업	• 소진공 확인 (제출서류 없음)

* 신청마감일 기준(22. 2. 9.)으로 해당여부 검토

** 가점한도는 최대 5점이며 신청서 작성 시 해당 가점분야 체크 필수(미체크시 가점부여 無)

6. 추진절차(안)

공고	신청·접수	서류평가	발표평가
중기부, 소진공 '21년 12월	▶ 소진공, 소공인 '22년 1월~2월	▶ 평가위원회 2~3월	▶ 평가위원회 2~3월
협약	사업수행	결과보고	사업비 정산
공단↔소공인 3월 중	▶ 소공인 3월~10월	▶ 소공인→공단 10월 중	▶ 소공인↔공단 11월 중

*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7. 접수·문의처

가. 문의처

구분	담당자	문의
신청·접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 1670-9595
사업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 회원가입(대표자 명의) 및 시스템 사용방법 사전숙지 필수

** 공고 이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 사업등록, 사업신청 등 문의사항은 e나라도움 사용자지원센터(1670-9595)를 통해 확인 요망

8. 유의사항

- 신청·접수는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http://www.gosims.go.kr)에서만 가능
 - * e나라도움 홈페이지 사업신청 매뉴얼 필독 후 신청접수 권장
 - ** 발생사유에 관계없이(시스템 오류 등) **공고마감 이후 추가접수는 절대 불가능**하며, 제출서류 및 정보와 관련하여 **공단에서 별도의 보완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 e나라도움 신청 시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며, [첨부파일]에 신청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첨부
 - * **개인회원으로 홈페이지 가입 시 반드시 사업자 권한을 부여받아야** 하며, 권한 미 부여시 휴·폐업, 체납여부 등 온라인 자격검증이 불가하여 정상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 **공고마감 이후 추가보완은 불가하며, 필수서류(소공인 확인서류, 신청서, 제품설명서 등)를 미제출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신청서, 제품설명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 될 경우 선정 후에도 선정취소 및 정부지원금 환수조치
- **선정평가 일정은 이메일로 개별통지**하며, 서류상 기재착오·연락두절·신청자 미확인·안내문 미숙지 등 착오 시 선정평가 제외

- 정부 지원사업 중 유사사업과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유의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전면시행에 따라 e나라도움시스템 (www.gosims.go.kr)을 통해 진행되는 의무사항 이행 필수
 - * 진행절차 : 사업신청 → 사업등록 → 교부 → 집행 → 정산 → 반납 → 정보공시
 - ** 본 사업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사업비 교부 등 전 과정 진행
- 선정된 소공인은 협약체결일 전까지 별도의 사업비 통장에 자기 부담금 전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미입금 시 선정·지원 취소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소공인은 협약체결시 국고보조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선정·지원 취소

- 【붙임】**
1.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기준 및 범위
 2. 소공인 집적지구 지역 및 업종현황
 3. 소공인 업종 및 기준
 4. 지원제외 업종
 5. 소상공인 및 업종 확인 기준
 6.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양식

【서식】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작성서류 양식

붙임1 소공인 판로개척지원 기준 및 범위

지원항목	기준 및 범위	단가(만원)		
		국고보조	자부담	계
전시회 참가	-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비(부스임차료, 부스장치비 등)지원 ※ 사업기간 내 개최하는 전시회에 한하여 지원	3,000 (80%)	750 (20%)	3,750 (100%)
온라인마케팅	① 온라인몰 입점 : 국내·외 온라인몰 입점을 위한 등록비, 판매수수료 비용 등 지원 ※ 사업기간 내 발생하는 수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② 온라인·SNS홍보 : 온라인몰 내 광고·프로모션비, 대행업체를 활용한 SNS마케팅 등 온라인매체를 통한 홍보비용 지원 ※ 개인(인플루언서 포함)과의 거래 지원 불가			
오프라인 매장입점	- 국내·외 오프라인몰(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팝업스토어 등) 입점을 위한 집기임차비, 판매수수료 비용 등 지원 ※ 집기, 부품 등 제작 또는 매입비용 지원불가 ※ 사업기간 내 발생하는 수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미디어콘텐츠 제작	① 디자인제작 : 카탈로그(종이/전자), 포장, 설명서, 상세페이지 등 제작을 위한 디자인비용 지원 ※ 동판제작 및 인쇄 등 디자인 이후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 지원불가			
	② 홍보영상제작 : 기업·제품 홍보영상 제작을 위한 비용(촬영, 편집, 자막 등) 지원 ※ 개인(모델, 인플루언서, 작가 등)과의 거래지원불가			
	③ TV송출 : 홈쇼핑, 드라마 PPL, 광고 등 TV 송출비용 지원 (IPTV, T-커머스 포함) ※ 사업기간 내 송출 완료되어야 함			

- ※ 협약기간 전/후 발생하는 사업비 지원 불가
- ※ 환급가능한 부가가치세 지원 불가
- ※ 사업비 집행 및 결과물 산출까지 협약기간 내 진행 必

붙임2

(가점해당시) 소공인 집적지구 지역 및 업종현황

구분	지역	범위	업종코드	
1	서울특별시	○ 금천구 독산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2		○ 성북구 보문동, 월곡동, 장위동, 종암동, 석관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3		○ 영등포구 문래동	• C24 (1차 금속 제조업)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 종로구 봉익동, 묘동, 원남동	• C33 (기타 제품 제조업)	
5		○ 성동구 성수동	• C15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6		○ 중랑구 면목동, 상봉동	• C13 (섬유제품 제조업, 단 의복 제조업 제외)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 C15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7		○ 마포구 서교동	•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8		○ 도봉구 창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9		○ 관악구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10		○ 양천구 신월동	• C15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11		부산광역시	○ 동구 범일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12			○ 금정구 서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13	인천광역시	○ 동구 송현동, 송림동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 C28 (전기장비 제조업)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4		○ 서구 오류왕길동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15	대구광역시	○ 중구 대봉1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16		○ 중구 성내동	• C33 (기타 제품 제조업)	
17	광주광역시	○ 북구 노원동	•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18		○ 동구 서남동	•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9	경기도	○ 동구 충장로 4가, 5가	• C33 (기타 제품 제조업)	
20		○ 군포시 군포1동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21		○ 포천시 가산면	• C32 (가구 제조업)	
22		○ 양주시 남면	• C13 (섬유제품 제조업, 단 의복 제조업 제외)	
23		○ 시흥시 대야동, 신천동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4		○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	
25		○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 C10 (식품 제조업)	
26		○ 화성시 향남읍, 팔탄면, 정남면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7		○ 화성시 봉담읍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28		○ 안양시 관양동	•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	
29		○ 여주시 오학동, 북내면, 대신면	•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0		○ 광주시 초월읍, 오포읍, 광남동	• C32 (가구 제조업)	
31	○ 김포시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2	○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구분	지역	범위	업종코드
33	대전광역시	○ 대덕구 오정동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4	강원도	○ 강릉시 사천면	• C10 (식품 제조업)
35		○ 강릉시 주문진읍	• C10 (식품 제조업)
36		○ 인제군 북면	• C10 (식품 제조업)
37	충청북도	○ 청주시 상당구 중앙동	•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38	충청남도	○ 공주시 유구읍	• C13 (섬유제품 제조업, 단 의복 제조업 제외)
39		○ 금산군 금산읍	• C10, C11 (식품, 음료 제조업)
40		○ 홍성군 광천읍	• C10 (식품 제조업)
41		○ 순창군 순창읍	• C10 (식품 제조업)
42	전라북도	○ 전주시 팔복동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43	경상북도	○ 영주시 풍기읍	• C10 (식품 제조업)
44	경상남도	○ 김해시 진례면	•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45		○ 하동군 화개면	• C10 (식품 제조업)

※ 집적지구 내 소공인은 해당 **지역범위**와 **업종코드**가 일치하여야 함

붙임3

소공인 업종 및 기준

*통계분류포털 한국산업표준분류 10차 개정 기준

업종		매출액 기준	상시근로자수
제조업	C10 · 식료품 제조업	120억원 이하	10명 미만
	C11 · 음료 제조업		
	C14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5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9 · 코크스, 연탄 및 석유 정제품 제조업		
	C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C21 ·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3 ·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C24 · 1차 금속 제조업		
	C25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C26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8 · 전기장비 제조업		
	C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2 · 가구 제조업		
	C12 · 담배 제조업	80억원 이하	
	C13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6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C17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8 ·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C22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7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31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3 · 기타 제품 제조업		
	C34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주업종 코드 및 항목명 확인 후 신청서 내 기재**

※ 매출액 기준 업종 확인방법

- ① 최근 1년간 총 매출액 중, 반드시 '제조업' 매출비중이 가장 커야함

※ 상시근로자 수 확인방법

- ① 중소기업확인서 상 '소상공인'표기확인 ②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를 통해 확인

붙임4

지원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악곡, 한악곡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희주점업
56212	무도유희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착한 임대인'에 한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 신청 가능 ('20.12.~'21.12.) (4page 참고)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표준산업분류	업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0)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붙임5 소상공인 및 업종 확인 기준

소상공인 확인 기준

1 지원대상 확인 개요

- 소상공인이란, 소기업^① 중 소상공인^②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③를 의미함
- 따라서, 해당 업체의 소기업 범위(매출액) 확인 후,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범위를 확인하여 정책자금 대상여부를 확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① (소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② (소상공인) 주된 업종별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③ (영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법인, 개인사업자)이므로 비영리기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 법인등록되어 있는 영리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2 소기업 확인방법

- 주업종의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이 주업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
 -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8조>
 - '매출액'이란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의미함. 다만, 업종 특성 상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등을 말함
 -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업 등 재무제표(손익계산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산정

할 수 있음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다음의 매출액 확인 서류 징구

구 분	매출액 확인 서류
간 이 과 세 자	사업자등록증(명)상의 과세유형(간이과세자) 확인
일 반 과 세 자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면세사업자(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 직전 또는 해당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하였거나 세무신고 제외대상 등의 사유로 인해 매출액 확인서류 등의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 기업이 확인 신청서에 관련 항목을 직접 작성(신청기업이 사업계획서 등에 기입한 매출액으로 확인)함으로써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참고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5조제4항>

<평균매출액등 산출방법>

사업기간	산출방법						
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③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table border="1"> <tbody> <tr> <td>가.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td> <td>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td> </tr> <tr> <td>나.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td> <td>창업·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td> </tr> <tr> <td>다.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td> <td>창업일·합병일·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td> </tr> </tbody> </table>	가.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	창업일·합병일·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가.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	창업일·합병일·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③ 소상공인 확인방법

-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①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업 종	기 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참고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②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①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 및 감사(사외이사 제외), 개인기업 대표
-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 근로계약서 등 확인
- ③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온·오프라인 발행)와 연구개발인력현황(신청 개인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 원본확인필 날인) 제출받아 확인
- ④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 근로계약서 등 확인

③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함

사업기간		산정방법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아래의 경우 제외)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에 속한 경우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예시>

구분	창업일	자금신청일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예시1	'18. 11. 20	'20. 3. 25	(직전 사업연도) '19년 1월~'19년 12월
예시2	'19. 2. 5		(최근 12개월) '19년 3월~'20년 2월

④ 상시 근로자 수 확인 서류 및 확인 방법

구분	내용	
확인 서류	상시 근로자 無 (택 1)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상시 근로자 有 (택 1)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 (고용.산재), 소상공인확인서 등
확인 방법	<p>■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 "확인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월수만큼의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제출받아 상시 근로자수를 파악 (예시) 업력 12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이 '19.2.26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2018년 1월~12월까지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제출(12장)</p> <p>■ 최근 1년 이내 지역가입자(상시 근로자 無)에서 직장가입자(상시 근로자 有)로 전환된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실내역 포함 된 과거이력 나오도록 발급)와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함께 제출받아 확인 (예시) 창업일: '17년 11월 2일, 신청일: '19년 1월 제출기간: '18년 1월 ~ 12월 직원 수가 창업일 당시 0명, '18년 5월부터 1명 고용 (필요서류)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실내역 포함) 2018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지역가입자로 상시근로자 없음 ②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18년 5월~12월) 2018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대표자 제외한 근로자 1명임을 확인</p>	

※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이거나 타인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사업장명칭이 해당 소상공인업체인 경우 반드시 상시 근로자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함

④ 소상공인 지위 유지 등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다음 ①~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에서 제외한다.
 - ① 소상공인이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②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③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④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 ⑤ 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업종 구분 방법

□ 업종분류 기준

-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원칙에 따르며, 세세분류(산업분류 5자리)에 의한 업종을 기준으로 함.
 - * (예)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아이템)으로 구분 : (25294) 주형및금형제조업
- **(사업자등록 업종)** 사업자등록증(명)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 주된 업종 판정 시 연매출액 비중 확인방법

- ①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
 - *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중 기타매출(국고보조금, 개발보조금 등)은 제외하고 산정
 - (예) 제품매출 > 상품매출 → 제조업으로 분류
 - 제품매출 < 상품매출 → 도소매업으로 분류
- ②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없는 경우, 최근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홈택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직접 신고 시에는 본인) 확인)의 매출액(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 부가가치세신고서 : 일반, 간이과세자 - 과세표준명세 업태 및 매출액 확인
 - 사업장현황신고서 : 면세사업자 - 수입금액(매출액) 명세 업태 확인
- ③ 위 1항 또는 2항의 매출액 비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징구

[서식 1]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 기본 자격요건 부합여부를 확인하고 “예/아니오”에 √를 체크(신청일 기준)
- ◆ 자격요건에서 1개라도 ‘아니오’로 체크된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처리
- ◆ 진단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선정 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구분	자격요건	확인 <input type="checkbox"/>
자격요건	<input type="radio"/> 소공인 여부 ① (업종) 사업자등록증 업태 및 종목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대분류) 중 25개 업종(중분류)에 해당 *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에 서로 다른 업종이 존재할 시 (예: 제조업, 도매업)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판단 ② (매출)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붙임3]업종별 소기업 매출액 이하 해당여부(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자는 해당) ③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 수(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기준)가 10인 미만 해당여부(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자는 해당)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등기된 이사는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 처리	□예 □아니오
	<input type="radio"/> 자기부담금 납부 - 사업비의 20%인 자기부담금에 대해 현금납부가 가능하십니까? * 자기부담금 전액은 협약체결 전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일시납부	□예 □아니오
제한요건	<input type="radio"/> 휴업 또는 폐업 여부	□예 □아니오
	<input type="radio"/>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예 □아니오
	<input type="radio"/> 최근 1년간 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여부	□예 □아니오
	<input type="radio"/>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여부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의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 시 사업신청 가능하며, “아니오”에 체크	□예 □아니오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 년 월 일 소공인(업체)명 : _____ 대표자명 : _____ (날인)		
【제출순】 1. <서식1>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2. <서식2> 사업 신청서 3. <서식3> 사업수행계획서(5장 이내) 4. <서식4> 제품설명서 5. <서식5> 개인(기업)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6.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7. (구비서류) 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8. (구비서류) 매출액·업종 확인서류 9. (구비서류) (해당시)가점 증빙서류		

[서식 2]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신청서

기업명	업종코드	※ [붙임3]을 확인 하여 주업종코드 기재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본 사 (우:)				
	공 장 (우:)				
※ 작성방법 : 사업자등록증명의 상호(법인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와 동일하게 기재					
대표자	성 명	휴대폰 번호			
	전화번호	메일주소			
담당자	성 명	휴대폰 번호			
	전화번호	메일주소			
가점사항	<input type="checkbox"/> 사회적경제기업 : <input type="checkbox"/> (예비)사회적기업 <input type="checkbox"/> (사회적)협동조합 <input type="checkbox"/> 마을기업 <input type="checkbox"/> 자활기업 <input type="checkbox"/> 백년소공인 <input type="checkbox"/> 집적지구 소공인 <input type="checkbox"/> 풍수해보험 가입자 <input type="checkbox"/> 첫걸음소공인 ※ 작성방법 : 해당하는 가점사항에 체크(☑)하고 증빙서류 제출必 (모집공고문 가점 기준 필독)				
	매출액	2018년	2019년	2020년	
수출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상시근로자수	천\$ 명	천\$ 명	천\$ 명	천\$ 명	
※ 작성방법 ① 2021년 매출액 증빙 발급가능한 경우, 2019년/2020년/2021년 매출기업 ② 신규창업자이거나 해당하는 내용이 없을 경우 '0'으로 작성					
신청항목 및 사업비	지원항목	신청 여부	총사업비		
			국고보조금	자기부담금	총액
	전시회 참가	<input type="checkbox"/>	만원	만원	만원
	온라인마케팅	<input type="checkbox"/>	만원	만원	만원
	오프라인 매장입점	<input type="checkbox"/>	만원	만원	만원
미디어콘텐츠 제작	<input type="checkbox"/>	만원	만원	만원	
총 액			만원	만원	만원
※ 작성방법 : 희망하는 지원항목에 체크(☑)하고 보조금 및 자부담금 기입 (모집공고문 지원항목 내용 및 기준 숙지 必)					
신청경로	<input type="checkbox"/> 온라인 뉴스		<input type="checkbox"/> 신문, 홍보물, TV		<input type="checkbox"/> 페이스북 등 SNS
	<input type="checkbox"/> 홍보현장(사업설명회 등)		<input type="checkbox"/> 주위사람		<input type="checkbox"/> 이전부터 알고 있었음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input type="checkbox"/> 기타()		
상기와 같이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제출한 서류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제반규정에 의한 의무를 다하고,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취소·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에 동의함을 서약합니다. 2022 년 월 일 기업명 : _____ 대표자 : _____ (서명/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수행계획서						
신청 개요	기업명		설립일	년 월 일		
	마케팅 역량	국내	전담조직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전담인력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홈페이지	URL :			
	해외	전담조직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전담인력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홈페이지	URL :			
	서비스 역량	국내	콜 센터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A/S 센터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해외	콜 센터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A/S 센터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회사소개		※ 회사의 비즈니스모델, 당사의 주요 경쟁력, 차별점 등을 위주로 5줄 이내 작성 ※ 회사소개서(카탈로그) 있을 시 별도 첨부			
	판로개척노력 (현황)		※ 당사가 속한 시장의 환경분석, 판로개척 및 확대를 위한 사전준비 (전담인력채용, 인증획득, 홈페이지구축, SNS활용 등) 기술			
	지원배경 및 기대효과		※ 사업을 신청하게 된 이유, 사업목표(목표시장 및 목표 매출액) 및 기대효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			

제품명				
신청항목	<input type="checkbox"/> 전시회참가 <input type="checkbox"/> 온라인마케팅 <input type="checkbox"/> 오프라인매장입점 <input type="checkbox"/> 미디어콘텐츠 제작			
신규판로	국내	본 사업을 통해서 신규로 개척하고 싶은 유통채널 기재	해외	ex) 아마존, 쇼피, 타오바오 등
	수행계획 및 세부목표	(예시) 1. 전시회 참가 - 예산 : 625만원 (국고보조금 500만원, 자기부담금 125만원) - 수행계획 : △△제품의 유럽수출을 위해 '21. 0월 0일부터 ~ 0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국제□□박람회 참가 및 바이어 상담회 참가 예정. 외국인 홍보동영상을 상영하여 참가효과를 극대화할 계획 - 목표 : 1만불 이상 판매, 바이어 5개곳 이상의 수출상담 및 5만불 이상 수출계약 체결 2. 온라인 마케팅 - 예산 - 수행계획 : - 목표 :		
향후계획	※희망하는 신청항목에 체크(☑)하고, 반드시 '항목별'로 수행계획과 달성목표를 상세히 기술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본인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기업)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 및 기업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이용 목적 -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과 관련한 선정평가 및 사업 운영·관리, 홍보 ■ 개인(기업)정보의 수집항목 - 개인(기업)식별정보(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e-mail 등) ■ 보유 및 이용 기간 - 위 개인(기업)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기업) 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사업 종료일 후에는 향후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의 이력관리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기간은 수집일로부터 5년입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사업의 신청이 불가합니다. 	
본인은 귀사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기업)정보를 수집·이용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2. 개인(기업)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받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등 관리기관 및 기타 운영기관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운영·관리, 만족도 및 성과조사, 정책자료 활용 등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에 동의한 정보 및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기업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대표자명 등 기업기본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위 개인(기업)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3년간 보유·이용되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기업)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 시 본 사업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본인은 귀사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기업)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2022 년 월 일

기업명 : _____ (인) 대표자 : _____ (서명/인)
 담당자 : _____ (서명/인)